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안자 : 김법기 의원외

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,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“건설담당 국장”을 “주택건설관련 국장”으로 함
- 안 제8조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함
-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함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1호의 “건설담당 국장”을“주택건설관련 국장”으로 하고

안 제8조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하며

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	충청북도 주택 조례안
<p>제4조(구성) ① 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설담당 국장 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이내 3.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인 이내 	<p>제4조(구성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택건설관련 국장 2. “현행과 같음” 3. “현행과 같음”
<p>제8조(회의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회의개최 3일전까지</u> 회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8조(회의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회의개최 7일전까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(제정안과 같음)</p>
제4장 보 칩	(보칙 삭제)
<p>제13조(과태료의 징수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 조제</p> <p><u>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」의 예에 의한다.</u></p>	